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法律 第7524號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사”를 “회사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連結財務諸表·結合財務諸

表 및 주권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公認會計士法”을 각각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公認會計士法 제33조제1항 각호”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로, “公認會計士法 第21條 各號”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公認會計士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제3항 중 “商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제6항 및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

제16007호

관

부

2005. 5. 31. (화요일)

회등록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후단, 제15조의2제1항 중 “會社·關係會社 및 系列會社”를 각각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株主 및 債權者”를 “주주 또는 채권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公正去來委員會 및 國稅廳”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세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중 “증권거래소(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증권업협회(대상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3제2항 및 제13조제6항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 등에 관한法律”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商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및 제18조 본문 중 “證券去來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③(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비공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대상에서 일정한 비공개 중소기업은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회사 및 임직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법 제2조의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법 제15조의3제4항 신설)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함.

다. 포상금의 지급(법 제15조의3제5항 신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法律 第7525號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